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주민투표법(법률 제7124호, 2004. 1. 29 공포)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

- 1) 20세이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(안 제3조)
- 2) 주민투표의 대상 (안 제4조)
- 3) 투표청구 주민수 ▷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/13 (안 제5조)
- 4) 서명요청방식 ▷ 청구인대표자 증명 및 서명요청권 위임 등 (안 제6조)
- 5) 서명요청기간 ▷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항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(안 제7조)
- 6) 서명보정기간 ▷ 10일 이내 (안 제11조)
- 7)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·운영 ▷ 7인이상 (안 제12조)
- 8)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(안 제14조)

나.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

- 1) 청구인서명부의 열람,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 (안 제15조)
- 2) 투표실시구역, 공표방법 등 (안 제16조)

3. 관계법령

가. 주민투표법 (법률 제7124호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은 2004. 1. 29 공포된 주민투표법 내용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받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 및 수치를 조정하므로 조례가 쉽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그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
 - 제2조는 구의 책무로서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고
 -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으로 투표법 제5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이며,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별표에 의한 영주체류자격자(별첨. 외국인의체류자격 참조)에게 투표권을 주려는 것으로, 30종의 체류유형중 법무부령에 의거(별첨자료참조) 체류기간의 상한 연수가 제한이 없는 영주체류자에게만 한정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추세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,
 -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시하였는데, 이는 표준안에 명시된 것으로 당연한 사항이나 법제8조 제1항에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”가 명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사항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5호는 제6호로하고 제5호를 “5. 법제8조 제1항에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”라고 추가 하는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됨
 - 제5조는 투표를 청구 할수 있는 주민의 수자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기준에 의거 인구 25만~30만 미만의 단체에 해당하는 수치인 총수의 13분의 1이상에 해당한 것이며, 이 수치는 청구주민의 최소한의 수치를 의미하므로 조항 말미의 “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”를 “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”로 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
 - 제6조는 서명요청방식으로 법제10조에 근거한 내용이며

- 제7조는 서명요청기간으로서 90일로 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·도는 180일 시·군·구는 90일로 통일한 것으로 충분한 기간이라 사료되며
- 제8조, 제9조, 제10조 등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으며
-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은 법제12조 제7항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표준안에 의거, 시·도는 15일 시·군·구는 10일로 된 것을 인용했으며
-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것으로 법제12조 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심의대상 심의회 구성방법등을 규정하였는데 심의대상은 문제가 없으나 제2항이하 심의회 구성등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38개(기획감사실자료)나 되는데 각위원회의 개최회수역시 연간 1~2회에 불과 한 점을 볼 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기존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것이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한 점임을 감안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투표에 회부될 사안도 그리 많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위원회중 본 조례안의 내용과 그 기능 및 구성인원이 비슷한 규제개혁위원회(조례 및 비교표참조)가 대행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제2항을 “심의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. 단, 심의회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”로하고 제3항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됨.
-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등을 위해 엄격히 제한하였고, 옥외집회는 집회법 및 공선법등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을것임
- 제15조 제16조는 각종서식과 공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합이 좋을것으로 판단됨.